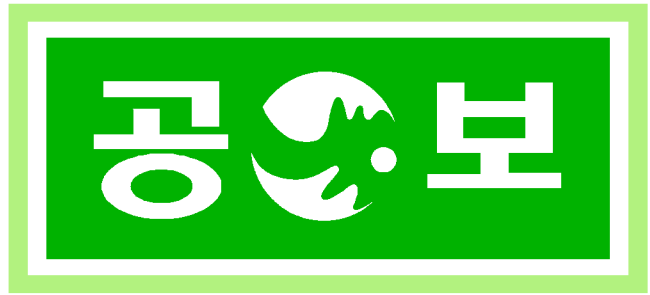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 관	기 관 의 장



**제 946 호 2015. 5. 4. (월)**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71호[도로명주소 고시] .....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72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73호[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 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74호[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고시] ..... 8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431호[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0

안 내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6 행정7126)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5 - 71 호

##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11길 25(명촌동)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5. 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명춘지구 1188 3L	울산광역시 북구 명춘1길 25(명춘동)	2015-05-04	옛지명이며현재도사용하는명칭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12-27	
2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357-1L, 357-28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41-11(상안동)	2015-05-04	이지명이며지명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8-03-11	지법추가
3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명춘지구 718 6-2L	울산광역시 북구 명춘6길 26(진정동)	2015-05-04	옛지명이며현재도사용하는명칭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12-27	
4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명춘지구 718 6-3L	울산광역시 북구 명춘6길 24(진정동)	2015-05-04	옛지명이며현재도사용하는명칭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12-27	
5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65-2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삼입3길 4(중산동)	2015-05-04	중산삼입단지내부도로라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5-02-02	
6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70-2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삼입1길 17(중산동)	2015-05-04	중산삼입단지내부도로라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15-02-02	
7	울산광역시 북구 정평동 512-2	울산광역시 북구 차월2길 22-5(정평동)	2015-05-04	기존차명미붙인차월마을에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지법개정 512.3 →512.2
8	울산광역시 북구 화물동 502-1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1길 19(화물동)	2015-05-04	하늘이내린표지가태어난마을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1-0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5 - 72 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6길 42(신천동)외 4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5. 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6길 42(신천동)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6-1	2015-05-04	건축물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6길 28(신천동)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8-4	2015-05-04	건축물 멸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2길 69(신천동)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8-2	2015-05-04	건축물 멸실	
4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2길 49-9(신천동)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8	2015-05-04	건축물 멸실	
5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2길 49-2(신천동)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1	2015-05-04	건축물 멸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5 - 73호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 울산광역시 복구 호계로 239-4(호계동)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5. 4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43-3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39-8(호계동)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39-4(호계동)	2015-05-04	신정예의한 변경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5 - 431호

##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목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한 지원기준 등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조례 “제명” 개정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
- 나. 조례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안 제2조)
- 다.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기준 정비(안 제3조, 제4조)
- 라. 지원신청, 지원절차를 추가(안 제5조, 제6조)
- 마. 관련대장 관리 등 추가(안 제8조)

#### 3. 근거법규

-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 나. 「모자보건법」 제2조



####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 전화번호 : 052-241-8131, 팩스번호 : 052-241-8109

#### 5.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및 그 밖의 사람으로서 신생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복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를 둔 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으로 인한 경우 부모 중 1명만 거주하여도 지급 가능하며,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이 경우에도 보호자는 1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복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자녀 이상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 순위별로 각각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출산지원금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 전화번호 : 052-241-8131, 팩스번호 : 052-241-8109

#### 5.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및 그 밖의 사람으로서 신생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복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를 둔 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으로 인한 경우 부모 중 1명만 거주하여도 지급 가능하며,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이 경우에도 보호자는 1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복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자녀 이상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 순위별로 각각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출산지원금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동장은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서에 따라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1. 보호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
2.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치료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출생순위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관리 등) 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 접수 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산지원금 지급 대장을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